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알코올성 음료에 임신부 경고 라벨 의무 표시 예정

- 2018년 10월 11일, 호주 및 뉴질랜드 정부 산하 식품 규제 포럼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포장 된 알코올성 음료에 부착될 임신 경고 라벨에 대한 의무 표시 기준과 그림 문자 및 관련 경고문을 개발해야 한다는데 동의
- 해당 포럼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청이 의무 표시 기준을 최우선 과제로 개발하도록 요청하였음
- 주된 목적은 알코올 구입 시 임신 중에 알코올을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며, 술을 마시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임신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것임
- 임신부가 알코올을 섭취하면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FASD)로 알려진 신체적, 인지적 행동 및 신경 발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 연간 FASD 발생률은 5%로 추정되면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은 약 10억불로 추정됨. 호주는 러시아와 함께 임신 중 알코올 음료 소비 비율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음



▲ 임신 중 알코올 소비 관련 경고 문구 (예)

* 출처 : 호주 연방정부 식품규제 포럼

2. 건강보조 스포츠 식품 수입관련 식품관리법 적용 강화

- 호주 농수산부는 2019년 1월 25일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스포츠 보조 식품이 수입되고 있다는 경고를 수입업자들에게 고지
- 이 제품들은 특정 영양 또는 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식품이며 일부의 경우 처방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
- 1992년에 제정된 수입 식품 관리법(Imported Food Control Act) 제 8조에 의하면, 수입업자가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것은 위법이며,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음
- 이번 고지에서 농수산부는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의 목록을 업데이트하였으며, 아래에 열거된 물질 중 하나라도 함유하는 보조 스포츠 식품 또는 보조 식품은 1992년 수입 식품 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입이 금지
- 일부 스포츠 보충제 특히 태블릿 또는 캡슐 형태의 보충제는 스포츠 식품 대신 처방 의약품으로 분류 될 수 있음
- 제품이 식품 또는 의약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성분, 제형, 제품의 효능과 관련된 광고 및 라벨링을 포함한 여러 요소에 달려 있으며, 소비되기 전에 물 또는 다른 음식과 혼합되는 분말 제품은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음
- 호주 의약품 및 독극물의 관리 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의 경우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개별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불량 식품으로 간주되어 수입이 금지됨. 인체 위험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는 식품 첨가물은 다음과 같음
 - 카다린
 - 1,3 디메틸 아밀 아민(DMAA), 메틸 헥사민 4, 메틸 2, 아미노 4, 메틸 헥산

- 1,3 디메틸 부틸 아민(DMBA)(AMP Citrate로도 알려짐)
- 1,5 디메틸 헥실 아민(DMHA)(Juglans Regia로도 알려짐)
- 2,4 디 니트로 페놀(DNP).
- 이부타몬
- 멜라토닌
- β-메틸페닐에틸아민(BMPEA)(Acacia rigidula에서 유래)
- 페니뷰
- 스테나볼릭
- 시네프린(권장 1일 복용량 30mg 이하인 제제는 제외)
 - 시네프린은 일반적으로 오렌지오일 또는 쓴 오렌지로 불림
- 이 외에 다른 치료 물질, 새로운 식물 추출물 또는 합성 유사체 등 새로운 성분이 추가되면 식품 안전성 평가가 완료 될 때까지 수입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

* 출처 : 호주 농수산부

1. 반려동물용 생가죽 개 껌에 대한 수입 조건 변경

- 호주 농수산부는 지난 2018년 12월 21일 애완동물 사료 관련 제품(소 및 돼지 동물의 가죽 / 가죽에서 파생 된 개를 위한 생가죽 껌 등)에 대한 수입 조건 변경 고시를 발표
- 농수산부는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African Swine Fever, ASF)의 확산으로 애완동물 사료용 돼지 추출 생가죽 껌이 더 이상 호주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수입검역 조건을 강화하기로 함
- 호주에는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발병사례가 없어 돼지콜레라 전염은 호주 농가 돼지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호주 청정이미지 훼손 우려
- 이에 따라 돼지가죽 또는 피부에서 추출한 생가죽으로 만든 제품 수입 시 질병에 감염된 동물로부터 추출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의 증명서 또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요구
 - 제조업체 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호주 도착 시 감마선 조사(50 kGy) 실시

* 출처 : 호주 농수산부

2. 불화 황산 훈증으로 처리된 제품에 대한 신고 요청

- 호주 농수산부는 2019년 1월 30일부터 수입 신고 시 불화 황산 훈증으로 처리한 용기를 신고하도록 수입업자 및 관세사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
- 신고 방법은 통합 카고 시스템 ICS(Integrated Cargo System)를 통해서 이루어 짐
- 불화 황산 훈증은 해충에 대한 승인된 생물학적 안전 조치이며, 검사 시 생물

보안 검사관은 생물 보안 또는 작업 시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하여 화물 책임자에게 관련 문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됨

* 출처 : 호주 농수산부

3. 썩덩나무노린재(Brown Marmorated Stink Bug) 위험 시즌 대비 수입식품 관리

- 호주 농수산부는 2018년 12월 24일 썩덩나무노린재 위험 시즌 중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화물 운송 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선박 운전자, 운송선, 하역업자, 부두 운전자 등 수입 및 해운 업계 관련자들에게 썩덩나무노린재의 방지를 위해 위험 국가의 모든 고위험 상품을 검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시
- 수입업체는 썩덩나무노린재 고위험상품에 대해 수입 전에 검역기준이 준수되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미 준수 시 하역이 허용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에 재수출해야 함
- 썩덩나무노린재 검역과 관련하여 피레쓰로이트 화학 살충제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허용되는 검역처리 방법에는 열처리, 황화 불소 훈증 및 메틸 브롬화물 훈증이 있음
- 썩덩나무노린재 검역 대상이 되는 국가는 아래와 같으며, 이들 국가에서 하역 또는 화물을 적재하는 모든 선박도 감시 대상임
 - 미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러시아, 그리스, 헝가리, 루마니아, 그루지야, 일본

* 출처 : 호주 농수산부